

조기졸업 시행에 관한규정(3-5-2)

제1조(목적) 학칙 제6조에 의한 조기졸업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8. 12. 06)

제2조(정의) 조기졸업이란 재학 기간 중 우수한 성적을 얻은 자에게 6학기 또는 7학기를 이수하고 소정의 졸업학점을 취득한 경우 학사학위를 수여함을 말한다.

제3조(범위) 조기졸업을 적용하는 범위는 본 대학교에 설치되어 있는 전 학부(과)로 하되 (의학과, 간호학과 제외) 각 학부(과)별 입학정원의 10% 이내의 인원으로 한다.

제4조(운영) ① 신청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칙에 의한 징계처분을 받지 않은 자.
2. 직전학기에 18학점 이상 수강신청하고 미취득 과목이 없는 자.
3. 직전학기까지의 총 성적 평점평균이 4.25 이상인 자로 하되, 재입학, 편입학자는 제외한다.(개정 96. 3. 11)(개정 05. 2. 16)(개정 06. 1. 25)

② 신청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기졸업 희망자는 해당 학기초 20일 이내에 학부(과)장의 추천을 받아 신청서를 총장에게 제출한다.
2. 신청자는 특별심사위원회의 사정에 의하여 조기졸업 대상자로 확정한다. 단, 특별심사위원회는 교무위원회로 같음할 수 있다.

③ 자격상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기졸업 신청자로 이수 도중 휴학하는 자.
2. 조기졸업 신청자로 이수 도중 징계처분을 받은 자.
3. 조기졸업 신청자로 이수학기 성적 총 평점평균이 4.25 미만인 자. (개정 '96. 3. 11)(개정 '05. 2. 16)
4. 본인의 희망에 따라 포기하는 자.

제5조(확정) 조기졸업자는 졸업 사정회에서 확정하되 다음 각 호의 조건을 갖춘자로 한다.

1. 졸업성적 총 평균평점 4.25 이상인 자.(개정 '05. 2. 16)
2. 교육과정상의 교양, 전공 등 소정의 학점을 충족한 자.
3. 졸업논문 심사에 합격한 자.

제6조(탈락자에 대한 조치) 조기졸업을 희망하는 자가 졸업 사정회에서 성적 미달로 탈락할 경우 잔여학기의 이수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6학기 조기졸업 대상자 중에서 탈락하는 경우 7차 학기를 이수하되 등록금을 전액을

납부 하고 최저 6학점 이상 수강 신청하여야 한다.

2. 7학기 조기졸업 대상자 중에서 탈락하는 경우 1과 같은 방법으로 8차 학기 등록 및 수강 신청을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1995년 3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1996년 3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이 개정규정은 2005년 2월 16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시행일 이전 입학자의 조기졸업 신청 및 확정 조건은 총 평점평균 4.0이상으로 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200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2018년 12월 6일부터 시행한다.